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43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손 술 · 최혁진 · 황운하
김재원 · 이주희 · 한창민
김영배 · 이해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6조).

한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될 경우 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224”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인”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및 교부세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 ----- ----- ----- ----- ----- <u>1만</u> <u>분의 2,224</u>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u>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u>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 ----- ----- ----- ----- <u><단서</u> <u>삭제></u>

